【논 문】

조선 후기 어업(水業) 종사 향화여진인(向化女眞人)과 선세(船稅)·어세(漁稅) 문제

한 성 주*

차 례

Ⅰ. 머리말
Ⅱ. 어업(漁業)에 종사한 향화여진인 사례
Ⅲ. 향화여진인에 대한 선세(船稅)·어세(漁稅)
Ⅳ.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려 말·조선 초 및 명청 교체기에 귀화하여 정착한 향화여진인(向化女眞人)과 그 후손들이 조선 후기 남부 연해 지역에서 어업(水業)에 종사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에게 부과된 선세(船稅)·어세(漁稅) 및 신역(身役)을 둘러싼 세제 정책과 수탈 대응 과정을 고찰하였다. 조선 초기 북방 국경 지대에 주로 거주하던 향화여진인 후손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남의 연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울산, 결성, 정산, 영광 등지에서 폐쇄적인 '향화촌(向化村)'이나 해척촌을 형성하여 어채(漁採)와 농업을 겸하였으며, 조선인의 해척·수군·역리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조선 사회에 정착해 나갔다. 조선 조정은 초기에 이들에게 전세와 역을 면제하고 예조(禮曹)에서 관장하며 무휼(撫恤) 및 우대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어업 종사 향화인에 대한 수세(收稅) 및 관리 주체를 둘러싸고 예조와 호조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예조는 어업 종사 향화인에게 약간의 선세를 받아왔는데, 재정난을 이유로 정묘호란 이후 호조에 절반을, 병자호란 이후에는 전체를 호조로 이속하면서 기존 선세에 더해 어공(御供)이 부과되었다. 이후 호조(戶曹), 충훈부

* 강원대 사학과 부교수.

www.kci.go.kr

(忠勳府), 기로소(耆老所), 궁가(宮家) 및 지방 관아에서 중복 및 과도한 침탈을 일삼자 향화인들은 수차례 정소(呈訴)와 상언(上言)을 통해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조정은 향화여진인의 어공을 면제하고 선세를 다시 예조로 환속시켰으며, 균역법 시행 후 향화여진인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화인의 신포(身布)를 전액 탕감하였다. 향화여진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초기 회유·우대와 복호 혜택에서 출발하여 균역법 시행 이후 신포 탕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타협과 변통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이족(異族) 출신 소수 집단을 행정 지배 체제와 조세 수취 구조 속으로 포섭·정착시키고 정체성을 재구성해 간 복합적인 통치 방식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향화여진인(向化女眞人), 어업(漁業), 선세(船稅), 어세(漁稅)

Ⅰ. 머리말

조선시대 향화(向化)[1]는 주로 조선 전기에 발생하였다. 이 중 향화여진인(向化女眞人)은 크게 원명교체기(元明交替期)-한반도에서는 여말선초(麗末鮮初) 시기-,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4군 6진을 설치한 시기, 명청교체기(明淸交替期)-조선과 후금·청 사이에서 정묘호란·병자호란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중국과 한국에서의 정치·군사적 변동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향화여진인은 주로 함경도에 거주하였는데, 세종은 이들 중 내지(內地)에 들어와 살기 원하는 자가 있으면 길주(吉州) 이남의 기름진 토지와 완전하게 갖추어진

1) 오늘날 귀화(歸化)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말하지만, 전근대 향화(向化)의 개념은 유교의 덕치주의(德治主義)와 관련되어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되는 일 또는 복속하여 그 나라에 찾아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귀화의 개념보다 전근대 향화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향화는 오늘날 귀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조선에 정착하였던 여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향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최선혜, 2007, 「조선 사회의 문화적 소수자, 향화인」, 『인간연구』 12; 서근식, 2009, 「朝鮮時代 '向化'개념에 대한 硏究: 『朝鮮王朝實錄』을 中心으로」, 『동양고전연구』 37 등 참조).

www.kci.go.kr

집을 주어서 안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구 수를 계산하여 옷, 식량, 소금, 장(醬)을 주고, 첫해 농경 때에는 관(官)에서 사람과 소를 주어서 도와주게 하였다.[2] 또 새로 향화해 온 사람에게 전세(田稅)는 3년, 요역(徭役)은 10년을 기한으로 면제하도록 하였는데,[3] 이는 조선의 성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수록되었다.[4] 그리고 향화여진인 중 특별히 구제해야 할 사람은 군사 정세가 긴급한 외에는 평상시의 역(役)은 모두 감면해 주었고, 향화여진인의 전세(田稅) 역시 대호(大戶)는 30결(結), 중호(中戶)는 20결, 소호(小戶)는 10결로 수를 정하여 면세해 주기도 하였다.[5] 다만, 1591년(선조 24)부터는 향화한 사람의 증손에게 역(役)을 정해주기 시작하였다.[6]

향화여진인이 군적(軍籍)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군역(軍役) 역시 면제되었는데,[7] 1697년(숙종 23)부터는 혹 군역에 차출되어 편성된 자들이 있는 경우 예조(禮曹)에서 장부[案]를 작성·관리하여 장정 1명당 포 1필씩을 거두고, 군역에 편성되어 있는 자들은 이름을 빼주어 면제하게 하였다.[8] 1758년(영조 34)에는 여러 도(道)의 향화인들은 일반 양인들의 군역과 달라서 군포(軍布) 1필만 거두고 있었지만, 군포(軍布) 2필에서 1필로 감해준 균역법(均役法) 시행 이후 군포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예조에서 관할하는 향화인들의 신포(身布)를 전액 탕감해 주었다.[9]

조선은 향화여진인에게도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적용하여 5호를 1통(通)으로 하고 통주(統主)를 두고 인구, 장정, 노약자를 매월 말에 대조 점검하는 등 자의적 이주는 통제하였지만,[10] 도망 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내지로 이동시켜 안치

2)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2월 13일 기해.
3)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7월 17일 경인.
4) 『經國大典』 戶典, 收稅; 兵典 復戶.
5)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0월 9일 계묘.
6) 『典錄通考』 兵典 下, 軍制, 受敎輯錄.
7) 『續大典』 兵典, 免役.
8) 『新補受敎輯錄』 兵典, 軍制.
9) 『萬機要覽』 財用編 3, 給代.
10) 『典錄通考』 兵典 下, 禁制, 後續錄, 五戶一統.

www.kci.go.kr

하거나, 본인이 거주 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기도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집단 이주를 허락하기도 하였다.[11] 또 15세기 후반부터 향화여진인들은 조선의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12] 즉, 시간이 지나면서 향화여진인의 후손 중 일부는 조선의 평안도와 함경도를 거쳐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로 이동하였는데, 이들 또한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업을 이어 나갔다.

한편 향화여진인에 대해서는 발생 배경, 정책, 활동, 대우, 정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13] 조선에 정착한 향화여진인이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잘 살펴볼 수 없다. 다만, 자료의 제한 속에서도 일부 향화여진인 후손의 과거 급제 양상이나 사례를 살펴보거나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호적 자료를 중심으로 향화여진인들의 정착과 생활 양상 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14]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시 사례 연구의 하나로서 조선 후기 어업(漁業)에 종사한 향화여진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조선의 정책 일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료의 제한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살피지 못하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향화여진인들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라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1) 이규철, 2020, 「조선전기 향화 여진인의 활동과 경계인의 삶」, 『역사와 현실』 117, 91-92쪽.

12) 이규철, 2020, 앞의 논문, 108쪽.

13) 최선혜, 2007, 앞의 논문; 백옥경, 2008, 「조선 전기 向化人에 대한 혼인규정과 여성」, 『역사학연구』 34; 이선희, 2009, 「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 권영란, 2017, 「조선 전기 대여진정책과 여진 귀화인 童淸禮」, 『역사와 실학』 62; 이규철, 2020, 앞의 논문; 김호철, 2023, 「조선초기 여진 귀화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07; 김호철, 2025, 「조선초기 여진 귀화인의 통혼과 통혼규정」, 『만주연구』 39 참조.

14) 임학성, 2008, 「17세기 전반 戶籍자료를 통해 본 귀화 野人의 조선에서의 생활 양상: 蔚山戶籍(1609)과 海南戶籍(1639)의 사례 분석」, 『고문서연구』 33; 원창애, 2009, 「향화인의 조선 정착 사례 연구: 여진 향화인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이옥빈, 2015, 「조선시기 북방계 향화인의 원거주지와 이주시기: 1609년 울산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박정민, 2022, 「여진 추장에서 조선의 관료로: 조선 초 최적 일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99 참조.

www.kci.go.kr

Ⅱ. 어업(漁業)에 종사한 향화여진인 사례

1609년(광해군 1) 울산호적(蔚山戶籍)에는 20호 33인의 북방계 향화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4대째 향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반도 이주 시기는 고려말과 조선 초기임을 알 수 있으며,[15] 이들은 조선 건국 초기 귀화 정책의 결과 조선 땅에 안착한 향화여진인들의 자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16] 또 1639년(인조 17) 해남호적(海南戶籍)에서 집계된 향화여진인의 수는 남자 21명과 여자 19명 등 총 40인인데, 이 중 호수(戶首)가 확인되는 경우 역시 4대째 향화를 기록하고 있다.[17]

그런데, 1609년이 되면, 황해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의 연해 열읍(列邑)에 향화여진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으며, 그중에서도 전라도, 충청도가 가장 많았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 4도에 근거한 향화여진인들의 배가 2백여 척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18] 1614년(광해군 6) 비변사는 향화호인(向化胡人)이 여러 도에 가득 차 있다며, 우리와 족류(族類)가 같지 않아 혹은 바닷가[海濱]에 살면서 고기잡이[海採]를 생업으로 하고, 혹은 내지(內地)에 있으면서 농사와 수렵[耕獵]하는 것을 일로 삼아 자손을 낳아 무리가 참으로 번성해 있다고 지적하였다.[19] 1625년(인조 3) 사재감(司宰監)에서는 향화어선(向化漁船)이 무려 수백 척에 달하며 모두 예조(禮曹)에 소속되어서 서호(西湖)에 남아있는 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였다.[20]

한편 병자호란 후 청(淸)나라에서 향화인을 쇄환하도록 요구하자, 1637년(인조 15) 하삼도(下三道)의 '향화인으로서 바다 가까이[近海]에 있는 자가 지극히 많은데,

15) 이옥빈, 2015, 앞의 논문, 137-144쪽.

16) 임학성은 1609년 울산호적 본문에서 확인되는 향화여진인의 수를 남자 30명, 여자 15명, 총 45명으로 보았으며, 각 면리가 끝날 때마다 해당 면리 내의 호구수, 신분별, 연령층별 인구수를 집계한 '「已上」'條에 기재된 향화여진인의 수를 총 40명(남자 29명, 여자 11명)으로 파악하였다(임학성, 2008, 앞의 논문, 102-103쪽).

17) 임학성, 2008, 앞의 논문, 102쪽; 106쪽.

18) 『광해군일기』 권15, 광해군 1년 4월 10일 신유.

19) 『광해군일기』 권80(정초본), 권29(중초본) 광해 6년 7월 25일 을해.

20) 『승정원일기』 10책, 인조 3년 11월 17일 임술.

www.kci.go.kr

이곳(조선)의 배를 조종하는 일을 아니 (들여보내는 것은) 지극히 중난(重難)한 일'이라는 우려도 있었다.[21] 또 인조는 청나라에 향화여진인들은 조선에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조선 백성과 서로 혼인하여 자손을 낳아 뿌리를 내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답하게 하였다.[22] 1639년(인조 17)에도 청나라의 향화여진인 쇄환 요구가 있자, 최명길(崔鳴吉)은 '바닷가[濱海]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 숫자가 매우 많다'고 하였고, 박황(朴潢)은 '바닷가[海邊]에 살고 있는 자는 향화인들이 대부분인데,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있어[漁採爲業] 해로(海路)의 원근(遠近)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어서 뒤에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이므로 들여보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23]

1639년(인조 17) 조선에 온 마푸타(馬福塔, Maputa, 마부대(馬夫大), [마사(馬使)])는 인조에게 병자년(1636년, 인조 14)에 회군(回軍)할 때 향화인이 조선에 많이 있었다며 앞으로 그들의 처자들까지 청나라에 쇄환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향화인을 쇄송(刷送)하는 일을 힘써 거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선에서는 향화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맡기어서 혹은 농사짓거나[農作] 혹은 어업[水業]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24] 이와 관련하여 1645년(인조 23)에 '농업향화(農業向化)', '수업향화(水業向化)'라는 말을 보면, 그들은 조선 각지에서 농사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25]

1677년(숙종 3)에도 향화인들은 이미 먼 지방에 흩어져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농사짓는 자[農業者]와 어업하는 자[水業者]로 구분하고 있다.[26] 1700년(숙종 26) 전라도 고창(高敞)의 유학(幼學) 유신우(柳新雨)는 '향화인이란 자[向化者]는 옛날 중국 사람[華人]으로서 표류해 우리 땅에 이르러 우리 백성이 된 자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백성이 된 지가 몇 백 년이 된 지 모르는데, 늘 향화인이라 일컫고 어업

21) 『승정원일기』 59책, 인조 15년 6월 20일 정사.
22) 『승정원일기』 60책, 인조 15년 8월 29일 기사.
23) 『승정원일기』 70책, 인조 15년 7월 2일 정사.
24) 『승정원일기』 70책, 인조 17년 7월 3일 무오.
25) 『典客司日記』 제3, 인조 23년 일자 미상, '向化人聯名呈訴, 船隻의 收稅侵責 폐단'
26) 『승정원일기』 261책, 숙종 3년 8월 11일 을묘; 9월 14일 무자; 『비변사등록』 33책, 숙종 3년 8월 11일.

www.kci.go.kr

하는 자[水業者], 농사짓는 자[農作者]가 있다'고 하였다.[27] 유신우가 향화인이 옛날 중국인으로 표류해 온 사람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일반화시킨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 백성이 된 지가 몇 백 년이 된 지 모른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전라도 고창 지역의 향화인들 역시 조선 초기에 귀화하여 정착한 향화인들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1721년(경종 1)에도 지방[外方] 향화자손(向化子孫)은 오로지 예조(禮曹)에 속해 있어, 육지에 사는 자[陸居者]는 포(布)를 거두고 어업하는 자[水業者]는 세금을 내게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28]

이를 종합해 보면, 조선 초기 향화여진인과 그 자손 중에는 세대가 지나면서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안착하여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채(漁採), 수업(水業), 수업자(水業者)라고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 호적 자료를 통해 파악된 어업에 종사한 향화여진인들은 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1609년 울산호적에 기재된 향화여진인들이 거주한 곳은 읍내리(邑內里), 동면(東面) 농소리(農所里)·유등포리(柳等浦里), 남면(南面) 온양리(溫陽里) 4개 면리(面里)로, 그 입지 조건은 연해(沿海)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주로 어업(漁業)에 의존하면서 생계를 이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29] 이들은 대부분 귀화인끼리의 폐쇄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조선인 마을의 중심부와 떨어져서 그들끼리의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30]

18세기 초까지 충청도 결성현(結城縣) 현내면(縣內面)에는 '향화리(向化里)'가 있었고, 여기에는 향화여진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서해안의 작은 마을로, 이들은 한편으로는 고기잡이를 하고,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31] 즉, 자기들끼리의 '향화촌(向化村)' 또는 향화여진인 후손들이 거주하는

27) 『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 10월 12일 신미.
28) 『승정원일기』 531책, 경종 1년 윤6월 5일 갑자.
29) 임학성, 2008, 앞의 논문, 107쪽.
30) 이옥빈, 2015, 앞의 논문, 119쪽.
31) 김혁, 2014, 「조선후기 충청도 서해안 지역 상업 활동의 사회적 의미: 홍성군 성호리 김녕김씨가

www.kci.go.kr

일종의 '동족촌(同族村)'을 소규모로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향화여진인들이 조선인으로 쉽게 동화되지 못한 조선 사회 및 향화여진인 양측 모두의 강한 폐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32]

다만, 향화여진인 자손 중에는 조선인과의 혼인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1609년 울산호적에서 향화여진인 후손이 조선인을 취처(娶妻)한 경우가 33%였고, 고기잡이와 해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하는 해척(海尺)의 딸과 결혼한 사례도 확인된다.[33]

新戶向化金三巾年陸拾柒癸卯本黑龍江父向化順京祖向化古川曾祖不知外祖向化劉挨山宗本黑龍江妻良女內隱非年陸拾捌壬寅本壤陽父海尺崔松元二祖不知外祖海尺元孫本壤陽率子向化松伊年參拾伍乙亥妻父母兒時俱沒四祖不知率男金伊年貳拾仇辛巳[34]

新戶向化金銀金年▣…▣(本黑)龍江父向化三巾祖向化順京曾祖向化古川外祖海尺崔松(元)本壤陽妻私婢卜代年參拾壹己卯父私奴曺叱金母良女進非壹所生婢卜介年拾壹▣…▣[35]

1609년 울산호적 남면(南面) 온양리(溫陽里)에 거주하는 신호(新戶) 향화인 김삼건(金三巾)은 흑룡강(黑龍江)이 본(本)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는 순경(順京), 할아버지는 고천(古川), 외할아버지는 유애산종(劉挨山宗)인데, 외할아버지 역시 향화인으로 본(本)이 흑룡강이었다. 김삼건의 아내[妻]는 양녀(良女) 내은비(內隱非)로, 아버지는 해척 최송원(崔松元), 외할아버지 역시 해척 원손(元孫)이었다. 김삼건과 내은비에게는 아들 김은금(金銀金), 송이(松伊)가 있었는데, 김은금은 별도의 신호(新戶)로 편성되어 있었다. 즉, 김삼건은 향화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조선인 해척 집안의 딸인 양녀와 혼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향화여진인 후손이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4, 217-218쪽.

32) 임학성, 2008, 앞의 논문, 95-96쪽.

33) 임학성, 2008, 앞의 논문, 112쪽.

34) 『光海一年己酉蔚山戶籍大帳』, 71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35) 위와 같음.

www.kci.go.kr

조선인을 취처하는 경향은 16세기 후반 이후에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36]

그리고 김삼건의 호(戶)는 온양리 266번째 호(아들 김은금은 268번째)로 등재되어 있는데, 263번째부터 281번째까지에 등재된 호수(戶首)들은 모두 해척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삼건이 거처한 마을은 이른바 '해척촌(海尺村)'이었다.[37] 그리고 1609년 울산호적에서는 남면에서 14명(온양리에 13명)의 해척이 확인되고, 동해에 인접했던 울산의 유포면은 울산 내 최대의 해척 거주지였으며, 다수의 해척촌이 존속했던 곳이었다.[38]

또 1648년 충청도 정산군(定山郡) 호적대장(戶籍大帳)[39]에서도 향화여진인 후손이 고기잡이와 해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하는 수업(水業)의 딸과 결혼한 사례가 확인된다.

第五戶向化人水業金必英年參拾肆乙卯生本黑龍江父良人成達祖向化人通政應祿曾祖向化人通政日陽外祖水業金禮承本庇仁妻鄭召史年參拾己未生本羅州父水業德承祖水業惡金曾祖浦人億卜外祖浦人朴孝良本密陽率女祀丹故率妻弟丁愛年貳拾伍甲子生乙酉戶口准[40]

면리(面里)는 확인되지 않지만, 11통 5호인 향화인 수업(水業) 김필영(金必英)의 본(本)은 흑룡강이다. 그의 아버지는 양인(良人) 성달(成達)이지만, 할아버지 응록(應祿)과 증조할아버지 일양(日陽) 모두 통정대부(通政大夫)이며 향화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필영의 외할아버지는 조선인 수업(水業) 김례승(金禮承)으로, 그는 향화인 자손과 조선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김필영의 아내는 정조이[鄭召史]로, 아버지가 덕승(德承), 할아버지가 악금(惡金)인

36) 임학성, 2008, 앞의 논문, 112쪽.
37) 임학성, 2008, 앞의 논문, 109쪽.
38) 박상현, 2020, 「17~18세기 울산 내 海尺의 존재 양상과 변화: 울산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55, 203-207쪽.
39) 이 호적 자료는 강원도 지역의 호적중초(戶籍中草)로 알려졌지만, 1648년에 작성된 충청도 定山郡의 호적대장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이동규, 2024, 「조선 후기 '皇朝人' 후손들의 분화 양상과 가계 전승: 대구 두릉 두씨 두사충 가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9, 183-184쪽).
40)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https://cksm.kangwon.ac.kr/) 호적중초(戶籍中草).

www.kci.go.kr

데 모두 직역(職役)이 수업(水業)이고, 증조할아버지는 억복(億卜), 외할아버지는 박효량(朴孝良)인데 모두 직역이 포인(浦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포인은 포구(浦口)나 해안·강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선박 운항, 해산물 채취, 소금 생산, 수운(水運) 관련 노동 등에 종사하던 주민으로, 정조이 가문은 어업에 종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필영은 정조이 가문과 결혼하면서 그도 어업에 종사하였고, 그의 직역이 수업(水業)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617년(광해군 9)에는 전라도 영광(靈光)에 거주하는 향화인 김논걸(金論乞)은 본래 여진인[北胡]으로 예조(禮曹)의 영건(營建) 공사를 돕는 어물(魚物)을 싣고 오다가 충청도 서산(瑞山) 창포(倉浦)에 도착하였는데, 밤에 해적(海賊)을 만나 전선(全船)을 약탈당하고 배와 실었던 잡물(雜物)을 빼앗기기도 하였다.[41] 1686년(숙종 12)에는 전라도 영광의 향화인 25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1696년(숙종 22)에는 충청도 서천(舒川)의 향화인 김소일(金小日) 등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42] 전라도 영광과 충청도 서천은 현재도 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물에 빠져 죽은 향화인들은 어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714년(숙종 40) 충청도 결성현(結城縣) 현내면(縣內面) 향화리(向化里)에 거주하던 향화인 김유청(金有淸)에게 발급된 준호구(准戶口)에서도 향화인과 조선인과의 혼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康熙五十三年七月日結城縣
考甲子成籍戶口帳內縣內面向化里第六統第四
戶向化金有淸年貳拾柒戊辰生本金海父向化信民祖向化
己▣曾祖嘉善大夫希福外祖向化池禮俊本黑龍江
妻良女李召史年參拾壹甲子生本完山父驛吏斗見
祖驛吏通金曾祖驛吏孝孫外祖驛吏金山男
本金海辛卯戶口准給者[43]

41) 『비변사등록』 1책, 광해군 9년 10월 13일.
42) 『숙종실록』 권17, 숙종 12년 윤4월 3일 병진; 『승정원일기』 365책, 숙종 22년 4월 28일 계축.
43) 1714년 27세 김유청(金有淸) 준호구(准戶口),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수집사료해제집

www.kci.go.kr

향화인 김유청의 부는 신민(信民), 할아버지는 기▣(己▣)로 모두 향화인이고, 증조할아버지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희복(希福)이다. 김유청의 외할아버지는 지예준(池禮俊)으로 역시 향화인이며 본(本)이 흑룡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유청의 아내는 양녀 이조이[李召史]로, 아버지는 두견(斗見), 할아버지는 통금(通金), 증조할아버지는 효손(孝孫), 외할아버지는 김산남(金山男)인데, 직역이 모두 역리(驛吏)이다. 따라서 김유청은 역리 집안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볼 수 있다.

1741년(영조 17) 충청도 결성현 현내면 성호리(星湖里)에는 김유청과 같은 증조할아버지를 가진 김성진(金聲振)이 거주하였는데, 그의 아들 명석(鳴碩)은 향화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김유청은 조선인 수군(水軍) 집안과 혼인하였음이 확인된다.

結城縣內面星湖里戶籍單子
戶**業武金聲振**年四十一庚辰生 本金海
父納粟通政大夫 信得
祖納粟嘉善大夫 厚龍
曾祖**老職嘉善大夫 希福**
外祖良人李順東本完山
妻良女崔召史年四十二庚辰生本慶州
父通政大夫以宗
祖**水軍 士立**
曾祖**水軍榮闓**
外祖業武張斗枝本海州
率子**向化鳴碩**年十五丁未生…44)

위의 호구단자(戶口單子)에서 김성진은 향화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직역이 업무(業武)라고 되어 있으며, 그의 아버지 신득(信得)은 납속(納粟) 통정대부(通政大

(https://db.history.go.kr/); 김혁, 2014, 앞의 논문, 217-218쪽.

44) 1741년 42세 김성진(金聲振) 호구단자(戶口單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수집사료해제집; 김혁, 2014, 앞의 논문, 221쪽.

www.kci.go.kr

夫), 할아버지 후룡(厚龍)은 납속 가선대부(嘉善大夫)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성진의 증조할아버지 희복(希福)은 노직(老職) 가선대부이고, 1714년 향화인 김유청과 같은 증조할아버지로 김성진과 김유청은 재종형제(再從兄弟)로 촌수(寸數)로는 6촌이다. 이 집안은 김희복을 중심으로, 김희복-김후룡-김신득-김성진, 김희복-김기▣-김신민-김유청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성진의 아내는 양녀 최조이[崔召史]로, 아버지는 통정대부 이종(以宗), 할아버지는 수군 사립(士立), 증조할아버지는 수군 영란(榮蘭), 외할아버지는 업무 장두지(張斗枝)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김성진은 김유청과 같은 향화여진인 자손이며, 그는 수군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김성진의 아버지 김신득은 동생이 죽은 뒤 홀로 남은 제수인 오맛단과 송사를 벌이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김후룡이 본래 수업(水業)을 하던 사람으로, 그는 한편으로 어채(漁採)하고 한편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집안은 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토지에 투자하고 고노(雇奴)를 고용해서 사들인 토지를 경작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45]

Ⅲ. 향화여진인에 대한 선세(船稅)·어세(漁稅)

조선은 새로 향화해 온 사람들에게 전세(田稅)는 3년, 요역(徭役)은 10년을 기한으로 면제하였고,[46] 향화여진인의 평상시 역(役)은 모두 감면해 주었으며, 향화여진인의 전세(田稅) 역시 결수(結數)에 따라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47] 어업에 종사한 향화여진인들 역시 면세의 혜택이 있었다. 즉, 1614년(광해군 6) 비변사는 향화여진인들이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거나 혹은 내지에서 농사와 수렵을 하면서 자손을 낳아 무리가 번성해 있는데, 그들의 면세를 이롭게 여겨 조선인

45) 김혁, 2014, 앞의 논문, 218쪽.
46)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7월 17일 경인; 『經國大典』 戶典, 收稅; 兵典 復戶.
47)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0월 9일 계묘.

www.kci.go.kr

들의 투입자(投入者)가 많다고 지적하였다.[48] 이를 보면, 향화여진인들이 면세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조선인들이 향화여진인이라고 칭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자원하는 백성에게 어량(魚梁)에서 어리(魚利)를 얻게 하되, 10분의 1을 세금[稅]으로 정하였다.[49] 또 어전(魚箭)은 사사로이 점유[私占]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가난한 백성[貧民]에게 지급하고 3년마다 교체하였다.[50] 그리고 사재감(司宰監)은 어류, 육류, 소금, 진상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서 어량세(魚梁稅)와 선세(船稅)를 징수하였다.[51] 조선 전기에 선세를 얼마나 수취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로로 다니는 장사치[水商]는 대선(大船)이면 저화(楮貨) 100장, 중선(中船)이면 50장, 소선(小船)이면 30장을 받았고.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를 잡는 왜선(倭船)에 대한 수세(收稅)는 대선은 200마리[尾], 중선은 150마리, 소선은 100마리였음이 참고된다.[52]

그런데 1591년(선조 24)부터는 향화한 사람의 증손에게 역(役)을 정해주기 시작하였다.[53]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향화여진인에 대해서 선세·어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예조에서 관장하다가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變] 이후에는 호조에서 절반을 가져갔다.[54]

병자호란 이후인 1637년(인조 15)에는 향화인에 대한 선세(船稅) 논의가 있었고,[55] 호조(戶曹)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향화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收稅] 그들의 배를 향화선(向化船)이라고 불렀다.[56] 1637년에 향화여진인의 선세와 관련된 논의는 예조에서 걷는 것을 호조로 전부 이관하는 것이었다. 즉 병자호란 이후

48) 『광해군일기』 권80(정초본), 권29(중초본) 광해 6년 7월 25일 을해.
49)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1월 23일 기묘.
50) 『經國大典』 戶典 魚鹽.
51)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6월 23일 신유..
52) 『經國大典』 戶典 雜稅.
53) 『典錄通考』 兵典 下, 軍制, 受敎輯錄.
54) 『度支志』 外篇 卷8, 版籍司, 財用部, 船稅, 附向化船.
55) 『승정원일기』 56책, 인조 15년 2월 23일 계사.
56) 『승정원일기』 78책, 인조 19년 5월 10일 갑신.

www.kci.go.kr

호조의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수입 전액을 옮겨간 것으로,[57] 이는 비변사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58]

당시 예조에서는 정묘호란 후 호조에서 절반을 가져가더니, 지금은 전체 수량을 가져다 쓴다면서 정묘년(1627년)의 예에 의하여 절반을 예조에 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59] 그러나 호조에서는 향화인이 비록 예조 관할이더라도 어염선세(漁鹽船稅)는 호조의 계통에 속해 있고, 만약 그렇다면 향화촌(向化村)의 전답(田畓)도 예조에서 거둘 것이냐며 반대를 표명하여 예조의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637년에는 향화선에 대한 어공(御供)과 세어(稅魚)를 정했는데, 당시 호조의 어세안(漁稅案)에는 향화선은 1척마다 어공(御供)이 석수어(石首魚) 50속(束)과 난해(卵醢) 1두(斗)이고, 중선(中船)은 세어(稅魚) 400속과 난해 2두 8승(升)이며, 소선(小船)은 세어(稅魚) 300속과 난해 2두 1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60]

1645년(인조 23) 1월에 예조에서는 향화여진인들에 대한 선세가 호조로 이관된 지 거의 10년이 되었다면서 이제 다시 예조로 환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61] 그 주장은 첫째, 예조의 하인(下人)들에 대한 식료(食料) 등 긴급하게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향화인들의 선세에 의지해 왔으나, 호조에 선세를 이관한 후 하인들에게 급료(給料)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빈곤하다는 것이었다. 예조는 예전에 향화여진인들의 선세를 전액 수납할 때도 오히려 부족하였는데, 근년 호조에서 보내주는 것은 10동(同)도 되지 않는 물고기뿐이고, 이 약간의 양으로는 예조의 기틀을 갖출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호조에서는 향화인들을 타 관청의 소유 정도로 여겨 제대로 거두어 보살피지 않아서 충훈부(忠勳府), 훈련도감(訓鍊都監) 등과 같은 곳에서 호조의 향화선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조는 향화여진인에 대한 선세는 호조에

57) 『典客司日記』 제3, 인조 23년 정월 28일; 구범진, 2019,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 315-316쪽.
58) 『승정원일기』 102책, 인조 26년 7월 18일 신사.
59) 『度支志』 外篇 卷8, 版籍司, 財用部, 船稅, 附 向化船.
60) 『승정원일기』 102책, 인조 26년 7월 21일 갑신.
61) 『典客司日記』 제3, 인조 23년 정월 28일.

www.kci.go.kr

별 이득이 없고 가장 재정이 빈곤하면서 일이 많은 예조에 환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예조에서는 파시평(波市坪)[62]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옛날과 같이 다시 예조에 환속시키고, 타 관청이 강제로 빼앗은 향화선 역시 예조로 환속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예조의 주장은 역시 호조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향화여진인에 대한 선세는 그대로 호조에서 계속 관장하였다.[63]

그러나 같은 해(1645년) 10월에 전라도 임피(臨陂)의 향화인 이난돌시(李難乭屎) 등이 연명(聯名)하여 향화선척(向化船隻)을 다시 예조에 환속시켜 달라고 정소(呈訴)하였다.[64] 당시 향화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향화인[農業向化]은 부역 및 세금을 면제하고 농우(農牛)와 농기구를 하사받았으며, 수업에 종사하는 향화인[水業向化]은 세안(稅案)에서 제외하고 예조에 약간의 세금만 납부하게 하여 다른 곳의 침탈을 받지 않아 각기 안접(安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정축년[1637년]부터 향화선척이 호조로 이속(移屬)된 뒤로는 예조에서는 전혀 거두어 보살피지 않고 호조 역시 보호하지 않아서 충훈부, 훈련도감 등 각처에서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 일반 백성과 똑같이 침탈하여 장차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구례(舊例)에 따라서 예조에 환속시켜 각처로부터 침탈당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조에서는 이 향화인들의 정소를 근거로 다시 향화여진인의 선세를 호조에서 예조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였다.[65] 특히 예조는 '향화인들은 마치 주인 없는 노비처럼 밖으로는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가 침탈하고, 안으로는 상급 관청[上司]이 침탈하여 장차 터전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는 '향화여진인들을 무휼(撫恤)하고 안접시키는 방도는 호조나 예조나 서로 다름이 없을 것이며, 내외의 상급 관청과 감사·병사·수사의 침탈과 책망 또한 이속하느냐 환속하느냐의 사이에 달린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우선은

62) 파시평(波市坪)은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에 있었다(『세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영광군).
63) 『승정원일기』 165책, 현종 1년 11월 24일 을해.
64) 『典客司日記』 제3, 인조 23년 일자 미상[내용상 10월 9일 이후].
65) 『典客司日記』 제3, 인조 23년 일자 미상[내용상 10월 9일 이후].

www.kci.go.kr

잠시 그대로 호조에 속하게 하고, 옛 규정대로 향화여진인들을 침탈하지 못하게 하며, 바친 세어(稅魚)는 예조에 넉넉히 보내어 아문(衙門)의 모양을 이루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비변사의 의논대로 시행하되 오랫동안 빌려 가고 돌려주지 않음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내년[1646년(인조 24)]까지만 호조에 계속 속하게 하라'고 하교하였다. 이를 보면 1647년(인조 25)부터 향화여진인들에 대한 선세는 호조에서 다시 예조로 10년 만에 환속되었다.[66]

향화여진인들에 대한 선세가 호조에서 예조로 다시 환속되었지만, 1648년(인조 26)에는 이와 관련한 어공(御供)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조 소속 향화인 전라도 임피 등의 고을 추장(酋長) 김응해(金應海) 등 13인과 충청도 한산(韓山) 등 고을의 추장 김귀인(金貴仁) 등 7인이 예조에 어공을 부과하지 말라고 청원한 것이었다.[67] 이들 20인은 '모두 향화인의 자손[孫枝]으로 전부터 5결(結)의 복호(復戶)를 받고, 수업에 종사하는 사람[水業之人]에게는 세안(稅案)에서 제외해 주어 어렵사리 보존해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작년[1647년] 예조로 환속된 후, 향화인의 배마다 이른바 어공이라고 하여 조기[石首魚] 50속과 알젓[卵醢] 1두씩을 독촉하여 거두고 있는데, 다른 각 관청[他各司] 소속의 세금을 거두는 백성의 배는 면세선(免稅船)이라 하여 이와 같은 역(役)은 없다고 하였다.

예조에서는 '다른 각 아문(衙門)의 면세선에서도 모두 바치지 않는 역을 향화인들에만 새로 만드니 지극히 원통하고 답답하여 이와 같이 호소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호조로 하여금 감면하여 없애 주어[減除] 이역(異域)의 사람들이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고, 인조가 이를 윤허하였다.

이를 보면, 1647년에 향화여진인들에 대한 선세는 호조에서 다시 예조로 환속되었지만, 호조에서는 1637년에 정해졌던 향화선에 대한 어공을 그대로 걷고 있었고, 이 어공은 향화인들에게만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조의 윤허가 있었지만, 곧바로 호조에서는 향화선에 대한 어공을 없애는 것

66) 『승정원일기』 165책, 현종 1년 11월 24일 을해.
67) 『典客司日記』 제4, 인조 26년 7월 13일.

www.kci.go.kr

을 반대하였다.[68] 호조에서는 '사재감(司宰監)의 공안(貢案)에 기재된 물자가 항상 부족하고 공상(供上)에 쓰일 것은 사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파시평(波市坪)에서 조기 50속와 알젓 1두로 그 부족한 수량을 보태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호조는 '예조가 세어(稅魚)를 거두면서 공상하는 일의 중함을 헤아리지 않고 어공까지 모두 다 거두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미 어공이라고 하였다면, 단지 향화인들의 정소(呈訴)에만 근거하여 줄여주도록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호조는 재차 향화선에 대한 어공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였는데,[69] '정축년[1637년] 어세안(漁稅案)에는 향화선 1척마다 어공이 조기 50속과 알젓 1두이고, 중선은 세어 400속과 알젓 2두 8승, 소선은 세어 300속과 알젓 2두 1승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면서 '어공인 건어(乾魚) 50속과 알젓 1두를 비록 호조에서 예전처럼 거두더라도 예조에 납부하는 배 32척의 세어는 많게는 12,100속, 알젓은 77두 7승에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조에서 거두는 수량이 이처럼 넉넉한데도 어공까지 아울러 옮겨 주라고 하는 것은 경중의 구별이 없으므로, 호조의 논의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여 마침내 인조의 윤허를 얻어냈다.

당시 예조는 향화인들에 대한 관리 및 어세를 걷으면서 여전히 호조가 향화여진인들에 대해 어공을 걷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반면 호조는 향화여진인들에 대한 어세를 예조에 돌려주었지만, 소속 아문인 사재감이 필요한 어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호조는 예조가 어공을 없애자고 주장한 것을 어세와 어공을 모두 예조에서 옮겨 달라고 하는 것으로 호도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1649년(효종 즉위년)에도 충청도 한산에 거주하는 향화인 추장(酋長) 서복룡(徐福龍) 등이 향화여진인에 대한 어공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70] 그 상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들은 흑룡강 여진인[胡人]으로 조선의 풍속이 선량하고 아름답다는

68) 『승정원일기』 102책, 인조 26년 7월 18일 신사.
69) 『승정원일기』 102책, 인조 26년 7월 21일 갑신.
70) 『典客司日記』 제4, 인조 27년 11월 10일. 인조는 1649년 5월 8일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상언은 효종 즉위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www.kci.go.kr

말을 듣고 두만강(豆滿江) 건너편에 거주하면서 여진인의 내부 사정을 매번 몰래 통보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진인들이 시기하여 자신들의 조상을 죽이려 하였으므로 조선에서 내지로 이끌고 들어와 점차 옮겨 왔다고 하였다. 그 당시 전후로 여진인의 사정을 통보해 준 공로와 조선을 위해 나온 정성을 가상히 여겨서 향화자손(向化子孫)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農業之人]은 복호(復戶)해 주고 농우와 농기구를 하사하여 보호하고 안접시켰다고 하였다. 또 어업에 종사하는 향화인[水業向化]은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예조에 속하게 하여 세안(稅案)에서 제외하여 복호해 주었으며, 약간의 조기[石首魚]를 '선항(船航)'이라 칭하여 예조에 납부하고 극진히 보호하고 우대해 주어서 이역(異域)에 온 뿌리 없던 사람들이 보존해 왔다고 하였다.

또 그들은 향화인들을 예조로 다시 환속시켰지만, 온갖 잡역을 일반 백성의 예에 따라 침탈하여 부과할뿐만 아니라 예전에 없던 어공의 역[御供之役]이 새로 정해져 예조에 환속시켜 보호하고 안접하라는 임금의 뜻이 도리어 허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물며 각 아문(衙門) 소속의 일반 백성의 배[民船]는 선세(船稅)를 각 아문에 납부한 뒤에 별도 어공의 역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전부터 세안(稅案)에서 제외된 복호선(復戶船)이었음에도 예조로 환속시켜 보호하라는 임금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있으며, 임시로 호조에 속해 있을 때도 납부하던 세어(稅魚) 2동(同) 외에 별도의 어공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예조로 환속된 뒤에 호조의 어공 명목을 향화인들에게 책정한 것을 새 조정이 열린 초기[新化之初]를 맞아 일체 법전(法典)대로 복호해 주고 예전 규정에 없던 어공의 역을 면제하여 보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자신들은 이역에서 나와 살아갈 길이 없자 각각 가산(家産)을 모두 팔아 스스로 작은 통나무 배[麻尙船]를 마련해서 물고기를 잡아 목숨을 이어왔는데, 올해(1649년) 충훈부(忠勳府)에서 말단(末端)에 목재를 대어 준 것이라며 위력(威力)으로 문서를 보내 선세(船稅)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지할 곳 없는 향화인들이 상급 관청[上司]의 명령에 겁을 먹고 규정 외에 선세를 강제로 내고 있고, 이러한 억울한 사유를 예조에 올려 예조에서 충훈부에 이문(移文)하였으나, 충훈부는 상

www.kci.go.kr

사아문(上司衙門)이라 변통하지 않고 그대로 차지하려고 하여 향화인들은 스스로 마련한 배[船隻]마저 빼앗기게 될 원통한 상황이므로 새 조정이 이를 엄히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는 '이 향화인들은 조선에 나온 지가 오래되어 우리 백성이 되었지만, 뿌리 없이 사방으로 유리하여 겨우 목숨을 잇고 있다는 것은 과연 저들의 호소한 것과 같다'고 하면서 '원래의 선세 외에 각 아문 소속의 일반 백성에게조차 거두지 않는 어공인 조기[石首魚]를 향화인들에만 홀로 정한다면 의지할 곳 없는 이역의 무리가 원통함을 부르짖게 되므로 호조로 하여금 면제하게 해 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배의 말단 역시 충훈부에서 목재를 대어 준 것이 아닌데도 빼앗아 차지하고자 하여 향화인들이 억울함을 칭하는 것도 실로 가련하니, 지금 이후로는 잡역(雜役)을 일체 다시 침탈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문서를 보내주자'고 하여 효종의 윤허를 받았다.

한편 1660년(현종 1)에는 공조(工曹)에서도 향화선을 귀속시키려고 하였지만, 예조에서는 공조가 선박을 관리하고 세금을 수납한다는 것만 알고 예조가 향화인들을 관장한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음을 알지 못한 것이라며 반대하였다.[71] 예조에서는 병자호란(1637년) 이후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호조로 귀속된 일, 1645년 다시 예조로 돌려주려다가 호조의 반대로 마침내 정지된 일, 향화인들이 정문(呈文)을 올려 인조가 '오랫동안 빌려 가고 돌려주지 않음은 매우 타당하지 않으니 내년까지만 호조에 계속 속하게 하라'고 하여 1647년 이후 예조에서 수납하게 된 유래를 설명하고 공조와 같은 곳은 향화인들의 선박을 관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의 향화여진인들에 대한 수탈은 계속되고 있었다. 1677년(숙종 3)에는 예조가 충청도 결성현감(結城縣監) 권만제(權萬濟)의 치보(馳報)를 근거로,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의 사수(斜水)와 차인(差人) 등이 각 포구로 내려가 각 아문 및 감사·병사·수사는 절대로 향화인들을 침탈하지 말도록 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향화인들을 침탈하는 폐단이 끝이 없다고 지적하였다.[72]

---

71) 『승정원일기』 165책, 현종 1년 11월 24일 을해.

72) 『승정원일기』 261책, 숙종 3년 8월 11일 을묘; 9월 14일 무자; 『비변사등록』 33책, 숙종 3년 8월

www.kci.go.kr

예조는 이와 같다면 하소연할 곳 없는 향화인 무리가 보존할 수 없게 되어 인조 때 결정한 뜻에 어긋나므로 지금부터 여러 궁가·충훈부·훈련도감·성균관 등 아문의 차인 및 감사·병사·수사의 감고(監考)와 색리(色吏)들이 여전히 종전의 습관을 답습하여 함부로 침탈하는 폐단이 있으면 적발하는 대로 죄를 묻겠다는 임금의 뜻을 다시 시행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관철하였다.

1682년(숙종 8)에는 전라감사가 전라도 향화인들이 납부하는 어물(魚物)을 진휼자금[賑資]에 보태어 쓰자고 건의하여 사용하다가, 1683년(숙종 9)에 예조에서 진휼사업[賑事]도 이미 끝났고, 향화인들의 어물은 예조에서 하급 서리 등의 요포(料布)로 쓰던 것이라며 다시 돌려받았다.[73] 이를 보면 향화여진인들의 어세(漁稅)가 일시적으로 진휼 자금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화여진인들의 면세·면역은 조선의 백성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어 종종 향화여진인들에게도 신역(身役)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때 향화여진인들에게 부과되는 선세(船稅)는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가 되기도 하였다. 1700년(숙종 26) 전라도 고창(高敞)의 유학(幼學) 유신우(柳新雨)는 상소하여 향화인들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백성이 된 지가 몇백 년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늘 향화인(向化人)이라 일컫고는 어업(漁業)을 하는 자나 농사를 짓는 자 모두 신역(身役)이 없다고 지적하였다.[74] 유신우는 향화인들의 장적(帳籍)을 상고하고, 그 연대(年代)를 한정하여 갯가[浦邊]에 사는 자는 수군(水軍)에 충당시키고 육지에 있는 자는 육군(陸軍)으로 정한다면, 수만 명의 정병(精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변사 역시 1591년(선조 24) 이후 향화인의 증손 이하에게 역을 정한 일을 근거로 들었지만, 예조에서는 향화인으로 포구에 사는 자[浦居者]에게 선세(船稅)를 거둔 예가 오래되었다면서 지금 다른 역으로 옮겨 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예조에서는 향화인의 자손 중에는 혹은 육지에 사는 자[陸居者]도 있고 혹은 포구에 사는 자[浦居者]도 있는데, 포구에 사는 자들은 배를 운용하므로 예조에서 그 선세(船稅)

11일.

73) 『승정원일기』 300책, 숙종 9년 7월 21일 경인.

74) 『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 10월 12일 신미.

www.kci.go.kr

를 거두어 예조 안의 부역자의 봉급[朔下] 및 일체의 용도로 삼아온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각 고을 연변(沿邊)의 향화인 자손 중 포구에 살며 배를 운용하는 자 및 각 선박의 격군(格軍)들은 절대로 다른 역으로 옮겨 정하지 말도록 하여 숙종의 윤허를 받아 내었다.[75]

하지만 예조의 거듭된 요청과 임금의 윤허에도 불구하고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이 향화여진들을 침탈하여 세금을 거두는 폐단은 계속되고 있었다. 1713년(숙종 39) 예조는 향화인들에 대해 침탈을 금지하는 '각판물침첩(刻板勿侵帖)'을 매년 인쇄하여 나누어 준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세월이 오래 흐른 뒤 각 아문에서 향화인들을 침탈하여 세금을 거두는 폐단이 생겼고 특히 충훈부에서 어장(漁場)을 절수(折受) 받았다는 핑계로 더욱 심하게 독촉하여 거두었다고 지적하였다.[76] 예조에서는 충훈부가 향화인들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임금께 아뢰어 윤허를 받았으나, 충훈부에서도 다시 임금께 아뢰어 예전대로 세금을 거두는데, 충훈부는 예조에서 거두는 것에 비해 많게는 4배에 이른다며 정수 외에 더 거두거나 향화인들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좌의정 이이명(李頤命) 역시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이 향화인을 침학하여 난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실제 향화인들에게 부과되던 세금을 충훈부나 감사가 취해 쓴 사례도 볼 수 있다. 1717년(숙종 43) 충훈부는 충청도 홍양(洪陽)과 서천(舒川) 등지에 위치한 연도(煙島) 및 사읍시도(沙邑時島)의 내외양(內外洋) 어장(漁場) 세금을 향화인(向化人)에게서 거두는 예에 따라, 충훈부에서 차인(差人)을 보내어 거두어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요청했지만, 숙종은 이번에는 충청감사가 청한 바에 따라 충청도에서 취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77]

또한 어업에 종사하는 향화여진인들이 번성하자 이들에게 포(布) 1필을 걷는 방

75) 『승정원일기』 394책, 숙종 26년 12월 17일 을해; 『비변사등록』 51책, 숙종 26년 12월 17일. 이후 1712년(숙종 38)에도 충청도 홍양(洪陽)의 유학 이제세(李濟世)의 상소 내용 중에 향화인을 모두 군역에 보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1713년(숙종 39) 비변사(備邊司)에서는 이를 가벼이 실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비변사등록』 65책, 숙종 39년 4월 8일).

76) 『승정원일기』 477책, 숙종 39년 4월 22일 기사.

77) 『승정원일기』 501책, 숙종 43년 4월 19일 계묘;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4월 19일.

www.kci.go.kr

안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즉, 1717년 예조에서는 향화인에 대해서는 역을 부과하는 일이 없었으나 그중 충청도 연해(沿海) 고을에 배가 있는 자는 예조에서 매년 사람을 보내어 어속(魚束)을 거두어 받았다고 하면서 근래에 이런 무리가 점차 번성하고 있어서 지방에서는 혹 군역(軍役)에 충원해 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금후 모든 향화인에 대해 예조에서 문안을 작성해 두고 포를 받던 유청군(有聽軍)의 예에 따라 장정(壯丁) 1인당 포 1필을 받아들이게 하여 조정에서 향화인을 단속하는 방법과 그들을 보존시키는 도리에 있어 예조와 지방이 모두 편리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시행하였는데,[78] 이는 향화여진인들이 번성하자 육지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포(布)를 거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포를 거두거나 예전처럼 세어를 바치게 한 것이다.[79]

1721년(경종 1)에도 예조는 기로소(耆老所)가 향화여진인들에 대해 선세를 거두는 것을 막아내었다.[80] 예조는 전라도 옥구(沃溝)의 향화인 1명에게 예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 올려보내라는 뜻으로 옥구현에 분부하였더니, 기로소(耆老所)에서 본소의 절수처(折受處)라 칭하며 선세를 독촉하여 거두므로, 옥구현감이 이를 위반하거나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예조는 기로소의 이른바 절수처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설령 향화인의 배가 왕래하며 물고기를 잡는 일이 있더라도, 정유년(1717년, 숙종 43년) 어선변통정식(漁船變通定式) 중에 '해변과 강가 일대의 여러 아문과 궁가에서 절수라 칭하며 무릇 지나가는 모든 배에 세금을 거두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니 모두 함께 혁파하라'고 한 것을 근거로 향화인의 배에 대해 기로소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예조는 향화인이 두 곳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중 징수[疊徵]라고 지적하였고, 이후 옥구의 향화인에게 기로소가 절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향화인도 침학하지 못하게 하라는 경종의 분부를 받아내었다.

78) 『숙종실록』 권60, 숙종 43년 11월 22일 임신; 『승정원일기』 505책, 숙종 43년 11월 22일 임신;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1월 23일.

79) 『승정원일기』 531책, 경종 1년 윤6월 5일 갑자; 『승정원일기』 693책, 영조 5년 9월 9일 경진; 『비변사등록』 86책, 영조 5년 9월 9일.

80) 『승정원일기』 531책, 경종 1년 윤6월 5일 갑자.

www.kci.go.kr

1725년(영조 1) 뱃사람[船人]이었던 향화여진인 김귀인(金貴仁)은 전라도 영광군(靈光郡) 파시평(波市坪)에서 감관(監官)이 거두어 납부하는 어공의 조기[石魚]는 60속을 동전으로 대신하면[代錢] 16냥에 이른다며 무자년과 기축년의 승전(承傳)에 의해 특별히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향화여진인에 대한 어공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81] 여기서 김귀인이 말한 무자년은 1648년(인조 26), 기축년은 1649년(효종 즉위년)으로 보이며, 향화여진인의 어공에 대해 예조와 호조의 주장이 반복되고, 결론적으로는 향화여진인에 대한 어공 면제, 잡역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김귀인의 상언을 통해 전라도 영광군 파시평에서는 여전히 향화여진들에게서 어공을 걷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예조에서는 정축년[1637년] 이후의 어세안(漁稅案)을 상고하여 어공은 향화선 1척마다 조기[石魚] 50속과 알젓[卵醢] 1두라고 하면서 예조에 납부하는 33척의 어세(漁稅)는 많게는 1만 1천 속과 알젓이 77두 7승에 이르는데, 어공을 감해 준다면 경중(輕重)의 구별이 없게 되고 무자년[1648년] 조정의 판결 이후 파시평에 배를 대는 향화선에게 세금을 거두고 어공은 예전대로 납세하므로 규정 외에 함부로 침탈하는 것을 일절 금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또 1728년(영조 4)에 호남어사(湖南御史)가 장청(狀請)한 것에 따라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에서 절수(折受)한 어염(魚鹽)을 전부 호조에 소속시켰는데, 1729년(영조 5) 예조에서는 관할하는 향화인의 선세도 혼동하여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여 호조로 하여금 예조에 이를 내주게 하였다.[82]

한편 1750년(영조 26)에는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화여진인에 대한 선세와 신역(身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선 1753년(영조 29) 호남암행어사(湖南暗行御史) 한광회(韓光會)는 균역법과 관련하여 포구에 거주하는 향화인의 신포(身布)를 감면하도록 요청하였다.[83] 한광회는 연해 고을의 향화인은 혹은 명나라[大國]의 유민(遺民)이거나 혹은 이역(異域)의 유민(流民)이어서 일반 백성

81) 『度支志』 外篇 卷8, 版籍司, 財用部, 船稅, 附 向化船.
82) 『영조실록』 권24, 영조 5년 9월 9일 경진.
83) 『典客司日記』 제9, 영조 29년 9월 10일[내용상 9월 19일].

www.kci.go.kr

과 섞어서 역(役)을 부과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하였고, 이들이 처음 조선에 왔을 때 예조에서 별도로 후하게 대접하고, 또 살아갈 기반이 없을까 염려하여 바닷가에 거처하게 하여 어채(漁採)로 살아가게 하며 '향화(向化)'라 이름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그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이제 새로운 법령[均役法]이 급히 내려져서 이들을 '역이 없는 백성[無役之民]'이라 일컬으며 신포(身布)를 독촉하여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광회는 향화인들의 억울함을 첫째, 가장 가난하고 쇠잔한 자는 역시 포를 감면해 주는데, 향화인들은 빈부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독촉해 거두는 것, 둘째, 한 집에 역에 충당되는 정남(丁男)이 많으면 옛날부터 일부 감면해 왔는데, 향화인들은 노약자를 막론하고 머릿수대로 계산하여 독촉해 거두는 것, 셋째, 선인(船人)으로 균역청[均廳]에 세금을 바치는 자는 역시 다른 역이 없는데, 향화인들은 이미 균역청에 선세(船稅)를 바치고도 또 예조에 포(布)를 바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광회는 또 향화인들은 원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반이 없어 조정이 허락하여 살아가게 한 기반이 바닷물[海水]이며, 그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도 바닷물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암행할 때 이미 그 억울한 정상을 들었고, 출도(出道) 후에도 일제히 향화인들이 나와서 호소하면서 조정에 알려지기를 바랐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예조에서 신포(身布)를 중복하여 거두어들이는 것[疊徵]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대신(大臣)·균역청 당상[均堂]·예조 당상[禮堂]이 함께 임금에게 직접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 향화인들에 대한 과세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84] 당시 예조판서 홍봉한(洪鳳漢)은 명나라 사람[明人]의 자손은 처음부터 포(布)를 걷지 않았으니 논할 것이 없고, 향화인은 곧 흑룡강 여진인[野人] 등의 자손이며, 이들을 예조에서 관장하여 이전에는 육지에 사는 자[陸居者]는 포를 바치고, 포구에 사는 자[浦居者]는 해산물[海物]을 참작하여 대신 바쳤는데, 균역청이 설립된 후 해산물을 예전대로 거두어 바치다 보니 중복 과세[疊稅]의 혐의가 있어서 포구 거주자나 육지 거주자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포를 바치게 한 사실을 말하였

84) 『典客司日記』 제9, 영조 29년 9월 10일[내용상 9월 19일]; 『승정원일기』 1098책, 영조 29년 9월 19일 신미; 『비변사등록』 126책, 영조 29년 9월 19일.

www.nl.go.kr

다.[85] 또 홍봉한은 포구에 거주하는 향화인이 설령 선박이나 소금[船鹽]에 종사하는 업이 있더라도 균역청에 납부하는 것은 선박과 소금의 세금이고, 예조에 납부하는 것은 신역(身役)이라고 하면서 각양(各樣)의 보인(保人)이 비록 배를 부리거나 소금을 굽는 업이 있더라도 일찍이 이것으로 그 신역을 감해준 적이 없다며 지금 이 향화인 역시 다른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향화인들이 바치는 포는 품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퇴짜 놓는 일이 없게 하고, 각 고을의 가구별 잡역은 특별히 침탈하지 말라고 다시 엄히 신칙하여 호남암행어사 한광회의 포구 거주 향화인의 신포(身布) 감면 문제 제기는 잠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향화인들에 대한 중복 과세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는데, 1754년(영조 30) 호남이정사(湖南釐正使) 이성중(李成中) 역시 '세(稅)가 점점 무거워지므로 육민이 더욱 곤궁하고, 또 해민은 다 기뻐하나 오직 포변(浦邊)에 사는 향화인만 원망하는데, 세안(稅案)을 살펴보았더니, 과연 전보다 무거웠다'고 하였다.[86] 또 이성중은 '포구 거주 향화인의 신포에 관한 일[浦居向化身布事]'을 별단(別單)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는 균역법은 모두 칭송하지만, 홀로 눈물짓고 역이 늘어난 것을 원망하는 자들이 바로 향화민(向化民)이라고 하였다.[87]

이성중은 대개 포구에 거주하는 향화인의 역은 예전에 배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1척당 포(布) 몇 필을 예조에 납부하면 해[年]가 끝나도록 다른 세금이 없었고, 각처의 어장(漁場) 역시 향화인은 면제해 주었으나, 균역법을 시행할 때 1척의 세금이 혹 30냥이 되기도 하고, 혹 20여 냥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배의 크기를 측정하여 세금을 정하면서 향화인들만 홀로 다르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어장에서 세금을 걷는 것도 다른 배와 똑같이 하여 혹 90냥을 내기도 하고, 혹 70~80냥을 내기도 하는데, 이는 세안(稅案)에 기재된 것이라 향화인들만 홀로 탕감해 줄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이성중은 단지 이것만 논하

85) 『典客司日記』 제9, 영조 29년 9월 10일[내용상 9월 23일]; 『승정원일기』 1098책, 영조 29년 9월 23일 을해; 『비변사등록』 126책, 영조 29년 9월 27일.
86)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4월 29일 무신.
87) 『典客司日記』 제10, 영조 30년 일자 미상[내용상 4월 29일 이후].

www.kci.go.kr

더라도 향화인들의 선세는 예전에 비해 이미 수십 배가 되었는데, 예조에서는 또 신역(身役)으로 포(布)를 거두는 규정을 만들어서 선세는 예전보다 무거워지고 역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더욱 불평등한 것은 지난번에 수령(守令)들이 포구 백성들의 세금을 정할 때 세안(稅案)의 비중을 염두에 두어 균역청에 세금을 내는 어염선인(魚鹽船人)들은 감면해 주었으나, 예조에서는 향화인에 대해서 균역청에 이름이 있는 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두었으므로, 향화인들은 '우리만 홀로 무슨 죄인가'라고 여긴다고 하였다. 이에 이성중은 예조에서 거두는 신포(身布)를 변통하기 어렵다면 선세(船稅)라도 참작해 감해서 역을 균등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조는 호남이정사의 향화인에 대한 일은 비변사로 하여금 확실히 바로잡아서 함부로 세금을 거두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개선을 지시하고 있었다.[88] 그러나 1년 뒤인 1755년(영조 31) 좌의정 김상로(金尙魯)는 '일전에 호남이정사 이성중의 별단 내용 중 향화인의 일은 육지에 사는 자[陸居]와 바다에 사는 자[海居]가 뒤섞여 있는 듯하나, 만약 신포(身布)를 면제해 준다면 명나라 유민 후손[華人]과 구별되는 것이 없으므로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며 우선 그대로 두도록 하여 향화인들의 신포 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89]

1758년(영조 34) 7월 사간(司諫) 유건(柳健)은 자신이 몇 해 전[年前] 호읍(湖邑)에 있을 때 연해 각 고을에서 백성의 폐단에 관계되는 일을 들었다면서 다시 향화인들의 신역(身役) 문제를 지적하였다.[90] 그는 향화인들의 신역으로 포(布) 1필을 걷는 것은 조정에서 일반 백성[良民]과 조금 다르게 보아 원방의 사람[遠人]을 우대하는 성대한 덕[盛德]이었는데, 일반 백성의 역[良役]은 균역법 시행으로 1필로 줄었으나 향화인들은 감해진 것이 없어서 우대하는 본뜻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유건은 또 일반 백성의 역은 한 집 내에 3~4명의 부자(父子)가 함께 역을 지면 감면해 주는

88) 『승정원일기』 1105책, 영조 30년 4월 29일 무신.
89) 『승정원일기』 1122책, 영조 31년 8월 14일 을묘; 『비변사등록』 129책, 영조 31년 8월 17일.
90) 『승정원일기』 1158책, 영조 34년 7월 5일 기축; 『비변사등록』 135책, 영조 34년 7월 6일; 『典客司日記』 제12, 영조 34년 7월 13일.

www.kci.go.kr

규정이 있으나 향화인들은 예조에서 오직 대장의 기록[案付]에 따라 이름마다 징수하여 한 집에 비록 10명의 정남[丁]이 있더라도 한 사람도 면제됨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바닷가 외딴곳[海曲]에서는 이미 백골이 된 자에게 군포를 징수[旣骨徵布]하는 폐단이 있다고 하였다.

유건은 균역청을 설립하여 민역(民役)을 변통한 지금 향화인들이 조정의 일시동인[一視]하는 혜택을 입지 못하므로 예조에 분부하여 신포(身布)를 감해 일반 백성과 구별하는 덕의(德意)를 보이고, 한 집 내에서 함께 역을 지거나 죽은 부류 역시 일반 장정[良丁]의 예에 따라 일일이 시정하여 그 폐단을 혁파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이 일은 내가 내심 잘못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아뢴 바를 들으니 참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국초(國初)의 향화인들에 대해 신포[布]를 감해주는 것에 비해 지금은 도리어 본국(本國)의 백성만 못하다고 하였다. 영조는 또 신포를 거두게 된 것은 백 년 내에 있었던 일로, 지금 만약 1필을 반필(半匹)로 줄여주는 요행의 문[倖門]을 여는 것은 불가하므로 특별히 탕감(蕩減)하고 그 작성하는 성책(成冊) 역시 황조인(皇朝人)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고 하였다. 다만 영조는 예조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이것도 민역(民役)이니 예조의 재정 손실은 균역청에서 대신 주도록[給代] 하였다.

그해(1758년) 8월 예조판서 홍상한(洪象漢)은 영조가 지시한 향화인들의 포를 균역청에서 아직도 대신 주지 않아 하급 관리들에게 삭포(朔布)를 주지 못했다며 향화인들의 세금을 영구히 면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였다.[91] 좌의정 신만(申晩) 또한 향화인들에게 거두는 것을 명나라 유민 후손[華人]과 일체로 모두 감면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였다. 그러자 영의정 유척기(兪拓基)는 명나라 유민 후손[華人]과의 구별이 있고, 향화인의 손자에게 포를 걷지 않는 것은 혹 가능하지만, 외손의 외손[外外孫]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지극히 지나치며, 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의 자손들조차 모두 포를 거두는데, 홀로 향화인의 자손에게만 거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91) 『승정원일기』 1159책, 영조 34년 8월 26일 기묘.

www.kci.go.kr

이에 대해 영조는 1필의 역(役)이 된 후 일반 양민[良役]은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입었지만, 향화인은 본래 1필을 내던 것이라 홀로 감해진 것이 없으니 억울한 점이 있으며, 20여 동(同)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 영조는 이미 팔도에 반포하였는데 수십 동의 목면을 아끼려다가 신의가 없는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균역청 당상을 엄히 문책하고 즉시 균역청에서 예조에 대신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1758년 9월) 이익보(李益輔)와 유척기가 향화인의 외손의 외손[外裔之外裔]까지 모두 탕감한다면 많은 양정(良丁)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며 향화인의 직계 자손은 면제하고 외손은 군역에 충당할 것을 주장하자, 결국 영조는 친외손(親外孫)까지만 제한하도록 하였다.[92] 그리고 바로 예조는 비변사와 상의하여 균역청에서 예조에 향화인들의 신포를 대신 주는 것을 20동으로 정하고, 이를 동전[錢]과 포목(布木)으로 4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시행하자고 하여 영조의 허락을 받았다.[93] 이에 균역청 설치 이후 향화여진인들에게 받는 포는 법적으로는 모두 철폐되었다.

하지만 1798년(정조 22) 전라도 영암의 향화인 박승복(朴昇福)은 상언하여 1명당 바치는 것이 20여 금(金)이라고 주장하였고, 예조에서는 근래 감영과 각 읍의 수령들이 군포 및 잡역을 독촉하는 고통이 어민(漁戶)들에게 치우쳐 있다고 하여 향화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94]

Ⅳ. 맺음말

본고는 조선에 귀화·정착한 향화여진인(向化女眞人)과 그 후손들이 조선 후기 남

92) 『승정원일기』 1160책, 영조 34년 9월 5일 무자; 『비변사등록』 135책, 영조 34년 9월 7일; 『典客司日記』 제12, 영조 34년 9월 5일.

93) 『典客司日記』 제12, 영조 34년 9월 5일. 『萬機要覽』에는 예조의 수입 부족분을 균역청(均役廳)에서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매년 무명(木) 6동(同) 20필, 베(布) 1동 30필, 동전(錢) 1,200량이라고 하였다(『萬機要覽』 財用編 3, 給代).

94) 『典客司日記』 제45, 정조 22년 9월 3일.

www.kci.go.kr

부 연해 지역에서 어업(水業)에 종사한 사례와 이들에게 부과된 선세(船稅)·어세(漁稅) 및 신역(身役)을 둘러싼 조선 조정과 국가 기관, 향화인 간의 갈등 및 정책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초기 북방 국경지대에 안치되었던 향화여진인 후손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삼남(충청·전라·경상) 등 전국 연해 지역으로 이주·확산되었고, 이들은 울산, 결성, 정산, 영광 등지에서 '향화촌'이나 해척촌을 형성하고 어채(漁採) 및 농업을 겸하였으며, 폐쇄적 집단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차 조선의 해척·수군·역리 집안 등과 혼인하며 정착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어업 종사 향화인[水業向化]에 대한 수세(收稅) 및 관리 주체를 둘러싸고 조선 조정 내 예조(禮曹)와 호조(戶曹)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본래 예조에서 이들의 복호(復戶) 및 우대 정책을 관장하며 약간의 선세(船稅)를 거두어 하급 관리의 요포(料布)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국가 재정난을 이유로 정묘호란 이후에는 호조에 절반을, 병자호란 이후에는 호조에 전체가 이속되면서 선세와 더불어 엄격한 어공(御供)이 부과되었다. 이에 예조와 향화인들은 수탈과 침탈의 폐단을 이유로 환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1647년(인조 25) 예조로 환속된 이후 1649년(효종 즉위년) 어공 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7~18세기 향화인의 자손이 번성함에 따라 여러 궁가(宮家), 충훈부(忠勳府), 훈련도감(訓鍊都監), 기로소(耆老所) 등 중앙 아문과 지방 감영(監營)·수령(守令) 등의 중복 수탈[疊徵] 및 강제 절수(折受)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예조는 '각판물침첩(刻板勿侵帖)'을 발급하며 이들에 대한 침탈을 금지하고, 1717년(숙종 43) 장정 1인당 포 1필을 거두는 신포(身布) 제도를 정식화하여 이들의 군역 충원을 막고 보존하려 하였다.

한편 1750년 균역법 시행 이후 일반 양민의 군포는 1필로 감면된 반면, 향화인들은 1필을 그대로 부담함과 동시에 균역청의 선세·어세와 예조의 신포가 중복 부과되는 불평등에 직면하였다. 이에 1758년(영조 34) 영조는 향화인에 대한 신포를 전액 친외손(親外孫)까지만 탕감하고, 예조의 재정 손실분은 균역청에서 대신 지급[給代]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www.kci.go.kr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어업 종사 향화여진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초기 회유·우대와 복호 혜택에서 출발하여 재정 수탈의 대상으로의 변질, 과세 누락 집단으로의 재인식, 그리고 균역법 시행 이후 신포 탕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타협과 변통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전근대 국가가 이족(異族) 출신 소수 집단을 행정 지배 체제와 조세 수취 구조 속으로 포섭·정착시키고 정체성을 재구성해 간 복합적인 통치 방식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사료

『태종실록』, 『세종실록』, 『광해군일기』, 『숙종실록』, 『영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典客司日記』, 『經國大典』, 『典錄通考』, 『續大典』, 『新補受敎輯錄』, 『度支志』, 『萬機要覽』, 『光海一年己酉蔚山戶籍大帳』, 1714년 27세 김유청(金有淸) 준호구(准戶口), 1741년 42세 김성진(金聲振) 호구단자(戶口單子)

2. 논저

구범진, 2019,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

권영란, 2017, 「조선 전기 대여진정책과 여진 귀화인 童淸禮」, 『역사와 실학』 62

김 혁, 2014, 「조선후기 충청도 서해안 지역 상업 활동의 사회적 의미: 홍성군 성호리 김녕김씨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4

김호철, 2023, 「조선초기 여진 귀화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07

김호철, 2025, 「조선초기 여진 귀화인의 통혼과 통혼규정」, 『만주연구』 39

박상현, 2020, 「17~18세기 울산 내 海尺의 존재 양상과 변화: 울산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55

박정민, 2022, 「여진 추장에서 조선의 관료로: 조선 초 최적 일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99

백옥경, 2008, 「조선 전기 向化人에 대한 혼인규정과 여성」, 『역사학연구』 34

서근식, 2009, 「朝鮮時代 '向化'개념에 대한 硏究: 『朝鮮王朝實錄』을 中心으로」, 『동양고전연구』 37

원창애, 2009, 「향화인의 조선 정착 사례 연구: 여진 향화인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이규철, 2020, 「조선전기 향화 여진인의 활동과 경계인의 삶」, 『역사와 현실』 117

이동규, 2024, 「조선 후기 '皇朝人' 후손들의 분화 양상과 가계 전승: 대구 두릉 두씨 두사충 가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9

이선희, 2009, 「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이옥빈, 2015, 「조선시기 북방계 향화인의 원거주지와 이주시기: 1609년 울산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임학성, 2008, 「17세기 전반 戶籍자료를 통해 본 귀화 野人의 조선에서의 생활 양상: 蔚山戶籍(1609)과 海南戶籍(1639)의 사례 분석」, 『고문서연구』 33

www.kci.go.kr

최선혜, 2007,「조선 사회의 문화적 소수자, 향화인」,『인간연구』12

3. 기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수집사료해제집(https://db.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https://cksm.kangwon.ac.kr/)

투고일: 2026년 08월 28일 심사완료일: 2026년 10월 13일 게재확정일: 2026년 10월 13일

www.kci.go.kr

■ Abstract ■

A Study on Naturalized Jurchens Engaged in Fishing and the Issues of Ship and Fishery Taxes in the Late Joseon Period

Han, SeongJo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ngagement in fishing activities (水業) along the southern coastal region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by Jurchen descendants (Hyanghwa Yeojin-in) who naturalized during the late Goryeo–early Joseon and Ming–Qing transition periods, as well as the fiscal policy shifts and countermeasures regarding ship taxes (船稅), fishery taxes (漁稅), and corvée obligations (身役) imposed upon them. Initially residing along the northern borderlands during the early Joseon era, these descendants migrated to the southern coastal areas of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over generations. They established exclusive "Hyanghwa villages" (Hyanghwachon) or fishing communities in regions such as Ulsan, Gyeolseong, Jeongsan, and Yeongkwang, combining fishing with agriculture and gradually assimilating into Joseon society through intermarriage with local fisherfolk, naval forces, and station-station clerks. While the Joseon government initially offered tax exemptions and preferential relief policies (Muhyu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Rites (禮曹, Yejo), conflicts arose between the Ministry of Rites and the Ministry of Taxation (戶曹, Hojo) over tax collection rights as the fishing population grew. Following the Jurchen invasions, tax rights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Taxation, introducing additional tribute burdens (Eogong) and leading to severe over-taxation and exploitatio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In response to repeated petitions and appeals (Sangeon) by the Jurchen descendants, the government eventually abolished the tribute burden, returned tax jurisdiction to the Ministry of Rites, and fully exempted their military cloth tax (Sinpo)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alized Tax Law (Gyunyeokbeop). This trajectory reflects the complex statecraft of integrating an ethnic minority into the administrative and fiscal framework through continuous compromise and policy adjustments.

Key words: Naturalized Jurchens (Hyanghwa Yeojin-in), Fishery, Ship Tax, Fishery Tax

www.kci.go.kr